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 . . (제 회)	

지 방 공 무 원 임 용 령 일 부 개 정 령 안

제 출 자	국무위원 ○○○ (행정안전부장관)
제출 연월일	20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자녀의 구분 없이 육아휴직 기간 전부를 경력으로 인정하고, 자녀 양육을 위해 상호 교류하는 경우 전출제한기간이 지나기 전에도 전출을 허용하는 등 저출생 극복을 위한 인사정책을 강화하는 한편,

자기개발휴직의 재직 요건 완화, 업무대행 공무원의 수당 지급범위를 확대하여 저연차 공무원의 업무집중 여건 조성에 기여하고,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 강화와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자녀의 구분 없이 육아휴직 기간 전부 경력 인정(안 제31조의6, 제33조)

- 1) 첫째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기간도 휴직기간 전체를 경력평정 기간에 포함하도록 경력 인정 확대(안 제31조의6)
- 2) 육아휴직을 대신하여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으로 지정되어 근무한 기간 전부에 대하여 승진소요최저연수에 포함(안 제33조)

나. 자녀 양육 공무원의 전출제한 요건 면제(안 제27조의7)

자녀 양육을 위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과 상호 전출·입 교류하는 경우는 전출제한 기간 내에도 전출을 허용하도록 개선

다. 자기개발휴직 재직 요건 완화(안 제38조의20)

자기개발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재직 요건을 5년 이상에서 3년 이상으로 하고, 복직 후 다시 자기개발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근무기간을 10년 이상 근무에서 6년 이상으로 완화

라. 업무대행 공무원의 수당 지급범위 확대(안 제38조의16)

휴직 사유와 관계없이 휴직한 공무원의 업무를 대행하기 위하여 업무대행 공무원으로 지정된 경우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업무대행수당 지급 범위를 확대

마. 성범죄 등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 강화(안 제75조의2)

성범죄 등으로 피해를 입은 공무원의 보호조치를 위하여 전출제한 기간이 지나기 전에도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으로 전출을 허용할 수 있도록 개선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안

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제1항 단서 중 “제38조의13까지”를 “제38조의13까지, 제38조의19부터 제38조의20까지”로 한다.

제13조제1항제2호 중 “6개월”을 “임용예정 직위와 관련된 6개월”로 한다.

제16조제2항 중 “시험실시기관의 장은”을 “임용권자는”으로 한다.

제17조제2항제2호 중 “시간제선택채용공무원 또는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이었던”을 “시간제선택채용공무원,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한시임기제공무원이었던”으로 한다.

제21조의4제2항 본문 중 “제62조제2항에 따른 공고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근무기간”을 “근무기간”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제62조제2항에 따른 공고 절차를 거치지 않고 해당”을 “해당”으로 한다.

제27조의5제1항제1호 중 “위하여 5급 이상 공무원이나 6급 기술직렬”을 “위하여”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이웃한 지방자치단체 간에 교류하는”을 “교류하는”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5급 이하 공무원”을 “공무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경우(파견의 경우는 제외한다)”를 “경우”로 한다.

제27조의7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소속 공무원의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에 대하여 동의할 수 있다.

1. 기구 개편, 직제 변경 또는 정원 변경으로 그 직책이 없어지거나 정원이 초과되는 경우
2. 공무원이 자녀 양육을 위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과 교류하는 경우(자녀를 양육하는 공무원의 범위와 세부사항은 임용권자가 규칙으로 정한다)

제31조의6제2항제1호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 법 제63조제2항제4호에 따른 휴직은 그 휴직기간. 다만, 이 경우 휴직 당시의 직급에서 직무에 종사한 것으로 보는 기간은 제33조 제11항제2호에 따른 근무기간과 합산하여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제33조제11항 단서 중 “전부 포함하되, 법 제63조제2항제4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을 대신하여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으로 지정되어 근무한 기간은 둘째 이후의 자녀부터 3년의 범위에서 전부 포함한다”를 “포함한다”로 하고, 같은 항 단서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 전부를 포함한다.

제33조제11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각 계급별 1년 이내의 시간선택제전환근무기간

2. 법 제63조제2항제4호의 사유로 육아휴직을 대신하여 시간선택제전
환공무원으로 지정되어 근무한 기간(자녀 1명당 최대 3년의 범위로
한정한다)

제38조의16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을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업무를 대행하는”으로 하고, 같은 항 제1
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38조의20제1항 중 “5년”을 “3년”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10년”을
“6년”으로 한다.

제75조의2제3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27조의7에도 불구하고 임용권자를 달리하는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으로의 진출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육아휴직 등 경력 인정에 관한 경과조치) 제31조의6과 제33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전 육아휴직을 하거나 육아휴직을 대신하여
시간선택제 전환 근무를 한 사람에게도 적용한다. 다만, 육아휴직을
하거나 육아휴직을 대신하여 시간선택제 전환 근무를 한 사람이 이미
승진임용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3조(자기개발휴직 요건 완화 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38조의20의 개정

규정은 이 영 시행일 이전 자기개발휴직을 사용한 사람에게도 적용한다.
제4조(성범죄 등 피해자 보호조치 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75조의2제3항
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 이전 발생한 성폭력범죄·성희롱 사건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조(적용 범위) ①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 중 경력직공무원의 임用に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영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법 제25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이하 “임기제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7조의2, 제7조의3, 제7조의5, 제8조의3, 제11조, 제12조, 제12조의2, 제13조, 제13조의2, 제14조, 제15조, 제21조의2, 제26조, 제27조, 제27조의2, 제27조의4부터 제27조의6까지, 제28조, 제29조, 제30조, 제31조, 제31조의2부터 제31조의4까지, 제31조의6, 제31조의7, 제32조, 제33조, 제33조의2, 제34조부터 제36조까지, 제38조, 제38조의2부터 <u>제38조의13</u> 까지, 제40조, 제41조 및 제55조	제1조(적용 범위) ① ----- ----- ----- ----- ----- ----- -----, ----- ----- ----- ----- ----- ----- ----- ----- ----- ----- ----- ----- ----- ----- ----- ----- <u>제38조의13</u> 까지, 제38조의19부터 <u>제38조의20</u>

까시-----.

② (현행과 같음)

[illegible]

1. (현행과 같음)

2. 임용예정 직위와 관련된 6개
월 -----

3. ~ 6. (현행과 같음)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16조(경력경쟁임용시험등을 통한 임용의 제한) ① (현행과 같음)

② 임용권자는 -----

수 있는 인원을 해당 기관 직급 별 정원의 3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17조(경력경쟁임용시험등을 통한 임용의 요건) ① (생략)

② 경력직 지방공무원 또는 국가공무원이었던 사람에 대한 제1항제4호의 경력 산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생략)

2. 시간제선택채용공무원 또는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이었던 사람의 경력은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산정한다.

③ ~ ⑤ (생략)

제21조의4(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① (생략)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일반임기제공무원, 전문임기제공무원 또는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하게 된 해당 사업이 계속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근무기간 내에 사업이 종료되지 않아 근무기간

-----.

제17조(경력경쟁임용시험등을 통한 임용의 요건) ① (현행과 같음)

② -----

-----.

1. (현행과 같음)

2. 시간제선택채용공무원,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한시임기제공무원이었던 -----
-----.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21조의4(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① (현행과 같음)

② -----

근무기

간

③・④ (현행과 같음)

⑤ -----

해 당

결을 거쳐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총 근무기간 5년을 초과하여 추가로 5년의 범위에서 일정한 기간 단위로 근무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27조의5(인사교류) ① 법 제30조의2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에 인사교류를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방자치단체 간 인력의 균형 있는 배치와 지방행정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하여 5급 이상 공무원이나 6급 기술직렬 공무원을 교류하는 경우
2. 행정기관 상호간의 협조체제 증진과 공무원의 종합적 능력 발전을 위하여 이웃한 지방자치단체 간에 교류하는 경우
3. 5급 이하 공무원의 연고지 배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③ (생략)

④ 제2항에 따라 인사교류를 하는 경우(파견의 경우는 제외한다) 본인의 동의나 신청이 있어야 하고, 인사교류 계획에 따라 교류 임용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

제27조의5(인사교류) ① -----

-----.

1. -----

----- 위하여 -----

2. -----

----- 교류하는 -----

3. 공무원-----

②·③ (현행과 같음)

④ -----
-- 경우 -----

교육부령 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사상 우대할 수 있으며,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⑤ (생략)

제27조의7(전출의 제한) ① ~ ③ (생략)

④ 기구 개편, 직제 변경 또는 정원 변경으로 그 직책이 없거나 정원이 초과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될 수 있다.

⑤ (생략)

-----.

⑤ (현행과 같음)

제27조의7(전출의 제한)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소속 공무원의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에 대하여 동의할 수 있다.

1. 기구 개편, 직제 변경 또는 정원 변경으로 그 직책이 없거나 정원이 초과되는 경우

2. 공무원이 자녀 양육을 위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과 교류하는 경우(자녀를 양육하는 공무원의 범위와 세부사항은 임용권자가 규칙으로 정한다)

⑤ (현행과 같음)

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휴직 기간 전부로 한다.

1) 첫째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모두 휴직을 하는 경우로서 각 휴직기간이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간 이상인 경우

2) 둘째 자녀 이후에 대하여 휴직을 하는 경우

2. (생략)

③·④ (생략)

제33조(승진소요 최저연수) ① ~ ⑩ (생략)

⑪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과 제38조의15에 따른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의 근무기간은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제1항의 기간에 포함한다. 다만, 제38조의15에 따른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이 해당 계급에서 근무한 기간은 1년의 범위에서 제1항의 기간에 전부 포함하되, 법 제63조제2항 제4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을 대신하여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

조제11항제2호에 따른 근무기간과 합산하여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2. (현행과 같음)

③·④ (현행과 같음)

제33조(승진소요 최저연수) ① ~ ⑩ (현행과 같음)

⑪ -----

-----, -----

포함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 전부를 포함한다.

으로 지정되어 근무한 기간은
둘째 이후의 자녀부터 3년의 범
위에서 전부 포함한다. <후단
신설>

<신 설>

<신 설>

⑫ ~ ⑭ (생 략)

제38조의16(휴직자 등의 업무를
대행하는 공무원) ①·② (생
략)

③ 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에게
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공무
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
할 수 있다.

1.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
라 병가, 출산휴가, 유산휴가,
사산휴가, 육아휴직 또는 법
제64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공무원 질병 또

1. 각 계급별 1년 이내의 시간선
택제전환근무기간

2. 법 제63조제2항제4호의 사유
로 육아휴직을 대신하여 시간
선택제전환공무원으로 지정되
어 근무한 기간(자녀 1명당 최
대 3년의 범위로 한정한다)

⑫ ~ ⑭ (현행과 같음)

제38조의16(휴직자 등의 업무를
대행하는 공무원) ①·② (현행
과 같음)

③ -----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업무를 대행하는 -----

-----.

<삭 제>

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이하 “공무상질병휴직”이라 한다) 중인 공무원의 업무를 대행하는 공무원

2. 제1항제3호에 따라 시간선택제 전환공무원의 근무시간 외의 업무를 대행하는 공무원

3. 제2항에 따라 출장 또는 파견 중인 공무원의 업무를 대행하는 공무원

제38조의20(자기개발휴직) ① 법 제63조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5년 이상을 말한다.

② 법 제63조제2항제7호에 따른 휴직(이하 “자기개발휴직”이라 한다) 후 복직한 공무원은 복직 후 10년 이상 근무하여야 다시 자기개발휴직을 할 수 있다.

③·④ (생략)

제75조의2(성폭력범죄·성희롱 상담 및 피해자 보호 조치 등)

①·② (생략)

③ 임용권자는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 성폭력범죄 또는 성희롱 사실이 확인되면 피해자의

<삭 제>

<삭 제>

제38조의20(자기개발휴직) ① --

----- 3년
-----.

② -----

-- 6년 -----
-----.

③·④ (현행과 같음)

제75조의2(성폭력범죄·성희롱 상담 및 피해자 보호 조치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의사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1. ~ 3. (생략) <u><신설></u> ④ (생략)	----- ----- ----- ----. 1. ~ 3. (현행과 같음) 4. 제27조의7에도 불구하고 임 <u>용권자를 달리하는 다른 지방 자치단체 등으로의 진출</u> ④ (현행과 같음)
---	--

〈 의안 소관 부서명 〉

행정안전부 지방인사제도과	
연 락 처	(044) 205 - 3344